

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“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 제4항 중 “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”를 “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, “동법시행령”을 “동법 시행령”으로, 제7조 제6항 중 “제7조제2항”을 “제7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 중 “법 제36조제3항”을 “법 제36조 제3항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36조제4항”을 “법 제36조 제4항”으로, “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중 “법 제36조제5항”을 “법 제36조 제5항”으로 하고, 제11조 중 ““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”와 “의회회의규칙””을 “「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</p> 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①~③(생략)</p> <p>④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<u>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</u> 제출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고,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 할 수 없다.</p>	<p>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</p> 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... ..</p> <p><u>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</u>... ..</p> <p>... ..</p> <p>... ..</p> <p>... ..</p> <p>... ..</p> <p>... ..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